



외 국 의

가금 위생계획 소개(1)

박 근 식
 <안양가축 위생 연구소>

<머 리 말>

우리 나라의 양계도 이제는 제법 그 규모가 커졌으며 축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으로서 농가 소득증대 사업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면에서도 양계를 위해서 년간 도입되는 사료 약제 병아리를 비롯해서 양계 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투자된 것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집중되었다.

그러나 투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생산 효과를 얻었는지 검토해야 할 시기는 되었다. 이는 개인의 소득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1972년 10월에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취하여진 10월 유신의 그 참 뜻에 비추어 보드라도.....

필자는 그동안 우리 나라 양계에 있어서 생산성이 일반적으로 정상 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을 여러 가지 면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그 중요한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주원인은 질병에 의한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각종 양계월간지나 강습회에 나아가 이의 중요성과 대책을 논한 바 있다. 특히 종계 및 부화장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그 효과를 충분하게 얻지 못하고 있다. 닭의 경우는 다른 가축과는 달라 알은 통해서 번식되고 있고 가금 질병중에는 어미닭에 걸린 병이 알이나 부화장을 통해서 피해를 많이 주고 있으므로 질병에 의한 피해의 방지 기본은 종계나 부화장에서 먼저 이루어져

야 한다.

이와 같은 대책은 세노적인 년과 기술적인 면 그리고 종계가 부화업자 일반양계업자의 양해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이다.

현재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구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때 마침 일본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보여 양계선진국의 가금 위생계획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입수되었기에 종계 및 부화장의 위생을 중심으로 연재를 소개하여 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제와 이들의 조직체가 상호 협력되어 전체적인 효율을 올려 한국의 양계 위생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되기 바라면서 소개하여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좋은 제도와 위생 관리 방법이 채택되어 명실 공히 수준이 높은 양계가 실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I. 미국의 가금위생 계획

1. 가금의 개량계획(미국 농무성)
 - 가. 가금의 개량 계획
 - 나. 전국 가금 개량 계획의 보족규정(補足規程)
 - 다. 가금개량 계획의 개정수속
 - 라. 위생 관리
2. 닭 및 칠면조에 있어서 마이코플라즈마 병의 방역과 박멸을 위한 권고 지침
3. 가축 사료 및 사료 원료로부터의 살모넬라균의 분리법.

I. 가금개량 계획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9)

(1968년 1월 1일 개정)

〈요 약〉

미국에 있어서의 가금개량 계획은 농무성장관의 승인을 얻어 193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연방 농무성의 회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특별 예산은 가금의 개량, 가금 생산물 부화장에 대한 규칙을 운영하는 주당국에 지출된다.

전국 칠면조 개량 계획은 194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계획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44년의 농업조직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

전국 가금 개량계획의 목적은 닭이나 칠면조의 생산성, 시장에 있어서의 생산물의 품질의 개선 및 부화장에 기인되는 질병에 의한 손실을 감소하는데 있다. 본 계획의 규정은 산업의 발전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차차 개정된다. 이러한 계획은 가금 개량계획 개정수속규정(家禽改良計劃改正手續規程)에 따라 각 주의 양계가 육종가 부화업자의 공식 대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 2년에 한번씩 열리는 전국가금개량 계획회의 원고에 기초를 두어 이루어진다. 본 계획회의 가입에는 주 및 각주내의 개인의 임의에 의하며 또 연방농무성에 협력하는 각주 정부기관에 의하여 각 주마다 운영된다.

II. 가금의 개량 계획

1. 정의

본장에 있어서 단수형(單數形) 또는 복수형(複數形)으로 쓰이는 용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역(逆)의 의미를 포함한다.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풀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a) 계획(Plan): 본장에서 규정되고 있는 전국 가금개량계획(National Poultry Improvement Plan)

(b) 사람(Person): 일반기업 또는 법인

(c) 농무성(Department): 미국연방 농무성

(d) 축산조사부(Animal Husbandry research Division): 농무성 농업조사국 축산 조사부

(e) 주(state): 각 주, 콜롬비아 지역 및 후에리트, 리코

(f) 주정부기관(Official State Agency): 본계획의 수행에 협력하기 위한 농무성에 의해서 승인된

해당 주의 기관

(g) 주검사관(State Inspector): 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장의 제11항 (b)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되었거나 승인된 사람.

(h) 공인 검사관(State Inspector): 본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11항의 (a)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

(i) Rop 감독관(Record of Performance Supervisor: 현장 점정감독관): 본장의 제 20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되었거나 승인된 사람

(j) Rop 검사관(Rop Inspector): 본장의 제 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고용되었거나 또는 승인된 사람

(k) 가입 종계장(Affiliated Flock owner): 가입 부화장과의 협정에 의해서 본 계획에 가입한 종계장.

(1) 계군(Flock)

(1) 종계의 경우: 한 개의 종계장의 한 종류의 교배(품종 및 내종(內種) 또는 계군(Stock의 조합) 및 특정 등급에 속하는 닭

(2) 방역상의 경우: 한 개의 농장에 있어서의 닭 그러나 다른 집단으로부터 격리되고 또 적어도 21일간 이상 격리된 계군으로서 주정부기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군으로 볼 수 있다.

(m) 부화장(Hatchery): 병아리의 생산자가 조작하거나 또 관리하는 한 건물내의 부란 시설

(n) 생산물(Products): 종계 및 종란 조생추 혹은 병아리 (6개월령 미만의 병아리)

(o) 초생추(Baby Chicks): 먹이 먹기전의 병아리)

(p) LISROP: 또는 미국 능력 점정(U.S Record of Performance)

(q) 계종(Strain): 적어도 5세대에 걸쳐 폐쇄군 육종(閉鎖群育種)을 실시한 종계군

(r) 계군(Stock): 닭의 특정 조합의 후대를 명확하게 하는 이러한 육종상의 조합은 순계(純系), 계통간교잡(系統間交雜) 품종간 교잡(品種間交雜) 또 그러한 조합을 포함한다.

(s) 병아리(started chickens): 먹이를 먹기 시작한 후 6개월령 미만의 어린닭(병아리: 若雌, 若

雄, 去勢雄鷄)

(t) 원종계감(Primary breeding flock): 종계(parent line)을 생산하고 계속 개량하기 위해서 사육한 또는 2이상의 세대를 경과한 계군

(u) 증식용 종계(Multiplier breeding flock): 원종계로부터 생산된 계군으로서 채란용 또는 채육용의 병아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종란을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군

2. 운 영

(a) 농무성은 본 계획의 운영에 있어서는 주정부기관과의 협정각서에 따라 협력한다.

(b) 주정부기관은 본계획 및 협정각서의 규정에 따라 주내에서의 본 계획의 운영을 한다. 주정부기관은 가입 및 감독의 조건에 관하여 두개의 주정부기관과의 사이에 문서에 의한 상호 이해를 조건으로하여 다른 주에 있는 계군의 가입을 받아드릴 수가 있다.

(c) 주정부기관은 해당주내에서의 본 계획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 계획의 규정을 잘 해석하고 나아가서는 본 계획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칙을 정할 수 있다.

3. 가 입

(a) 본 계획의 가입은 양계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1) 그의 설비 인원 업무가 큰 계획의 규정을 실행하는데에 적당하면 주정부가 인정하고 다만 (2) 본 계획의 일반 및 특수 규정이나 본장 (b)의 규정에 의한 주정부기관의 규칙에 따른다는 뜻을 주정부기관과의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 승인된다. 가입 종계장은 주정부기관과의 합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b) 가입자는 주 정부기관의 사업년도중 또는 정부기관이 해제할 때까지 본 계획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c) 가입자는 해당 주내에 있는 종란 생산 계군 및 부화사업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d) 주정부기관은 가입자에 대하여 본장 제10항의 (a) (b) (c) (d) 및 (e)에서 규정한 계급과 (f) 및 (g)에 규정한 자격 조건의 생산물을 한정하는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 본계획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가금개량

계획표식의 사용 자격을 부여한다.

4. 가입자에 대한 일반규정

(a) 매매의 기록 및 취급 생산물의 확인서는 주정부기관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b) 생산물 매매의 기록 및 생산물의 선전에 사용되는 광고등은 수시로 주정부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c) 선전은 본 계획 및 주정부기관이나 연방취인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입자는 제휴 또는 후란차스 계약을 체결한 부화장이 동일 종류로서 동일계급의 생산물만은 생산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그의 생산물의 계급이 공인이 된 것임을 선전에 사용할 수 있다.

(d) 가입자는 목적이야 어쨌든 비 가입자로부터 생산물을 구입 또 수취하거나 비가입자에게 팔거나 해서는 안 된다.

(e) 종란으로서 판매하는 알의 최저 중량은 채란용에 있어서는 1 11/12온스(약 54.34g) 부로 일러 용에 있어서는(10/12 온스(약 51.97g)로 한다. 종란의 구매자가 지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f) 미국 이외 또는 미국 내 및 통치지역에 대한 생산물의 출하는 NPIP(전국 가금 개량 계획) 양식 15F에 의해서 종란 병아리 닭의 매각 보고를 작성하여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가입. 계군에 대한 특별규정

(a) 관리용기구 계사 및 그의 후번의 토지는 위생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 제9,10항의 (a)와 (e)에 나타난 방법은 본 규정에서 결정한 지표(指標)로 본다.

(b) 모든 계군은 각각 정해진 품종 내종 또는 다른 조합의 특징을 갖고 건강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c) 과거 12개월 이내에 공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 그의 최근 검사에서 추백리 및 가금티푸스의 양성체가 없을 경우에는 가입종계군으로서 간주된다.(공식 혈액 검사법에 따라서는 본장의 제14항을 참조)

(d) 자 닭은 주정부가 교부한 것이거나 승인한 검인이 찍힌 번호밴드로서 식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주정부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한다.

6. 가입 부화장에 대한 특별 규정

(a) 육추실을 포함해서 부화장은 주정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제3장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조치는 본규정에서 정한 지표로 간주한다. 위생에 있어서의 최저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부란기의 측벽, 바닥 난좌는 난각이나 파손란에 부착해서는 안 된다.

(2) 셀과 핵차의 천정은 청결해야 한다. (물건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3) 판매실을 포함한 부란 전체는 잘 정돈하여 먼지가 쌓여서는 안 된다.

(4) 난각, 무정란 중지란 등의 부란잔사(孵卵殘渣)는 빨리 주정부가 지시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해야 한다.

(5) 핵차 및 발생좌는 부화후마다 청결하여 소독 또는 훈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의 방법은 제325조 제12항의 (b) 및 제13항의 (a)에서 규정한 방법을 사용한다.

(6) 종란은 제2장 제13항의 (a) (b) 또는 (c)에 규정한 방법에 따르며 부화장에서 훈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란은 부화장에 전송(轉送)한 후에 제3장 제13항의 (d)의 방법에 의하여 재훈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b) 병아리를 사육하고 있는 부화장은 이들의 병아리를 주정부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부란사로부터 격리한 상태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c) 본 계획으로 판매에 공하는 병아리는 정상으로서 품종 내종 교잡종 기타 다른 조합의 특징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d) 종란은 상처가 없고 품종 내종 계통 또는 이들의 교잡으로서의 특징을 갖고 모양이 고르지 않으면 안 된다.

지중해 연안종의 난각은 백색이 아니면 안 된다. 종란은 크기를 간추려 트레이 또는 상자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e) 개인 때로는 복수인, 혹은, 공동으로 소유

하거나 관리하고 때로는 이들이 출자하여 조업하고 있는 해당 주내의 부화장은 그 종의 한 사람이 가입하였다면 본 계획의 가입자로 간주한다. 이들 부화장의 초생추 중추 종란 종계는 추백리 기준에 합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가입판매업자에 대한 특별 규정

종계 종란 또는 병아리를 판매하는 업자는 그의 사업에 대하여 정하여진 본 계획의 모든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8. 용어 및 격(格) 부치기

(a) 본장 제9, 10항에 나타난 공식적인 격부치기 용어와 제10항에 일컫는 각종 격부치기의 표시는 해당 격부치기의 모든 조건을 갖춘 가입자의 해당산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b) 본계획의 근원으로 생산된 생산물은 다시 팔기 위해서 비가입자에 팔거나 인도한 경우는 이 계획의 용어의 효력을 잃는다. 모이를 먹기 시작한 후의 병아리는 본장 제5항의 (a)에 규정된 조건에 가입자의 관리를 벗어났을 때는 본계획의 용어의 효력을 잃는다.

(c) 가입계군 및 이들의 계군으로부터 생산되는 알이나 병아리는 그의 계통 또는 상품명으로 부를 수 있다.

(1) 해당 계통의 종계가의 직접 간접으로 생산된 알로부터 부화된 병아리

(2) 종계가가 지정하여 그의 관할 주정부기관에 제출한 사람이 증식한 계군

(d) 본장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격부치기에 해당하는 수금류(水禽類) 업조(獵鳥) 호로호로조는 격부치기에 따라 호칭하지 않으면 안 된다.

9. 용어 및 격부치기 : 부화장과 판매 업자.

각 가입 부화장 및 판매 업자는 자기 가입부화장 가입판매업자라고 호칭할 수 있다.

각 가입 부화장 또는 판매업자는 축산 조사부로부터 영속적인 인가 번호가 할당된다.

인가 번호는 부화장 또는 판매업자가 이 계획의 가입을 잃었을 경우에는 취소된다. 가입자의 추가 취소 격부치기 변경에 대해서는, 축산조사부로부터 각주에 통지한다. □□